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 제2항 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”는 임의 규정으로 보조금에 대한 환수가 지난할 가능성이 있어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라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보조금 환수를 강제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개정안 제20조 제2항의

“환수 할 수 있다.”를 “환수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 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 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</u></p> <p>2. <u>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